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전문위원 손윤목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1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, 도세 조례로 정하고 있던 사항을 기본 조례로 이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시장·군수가 도세 부과·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, 읍·면·동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, 도지사의 직접 세무조사 대상기준을 규정(안 제3조)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도세조례로 정하고 있던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특례를 도세 기본조례로 이관(안 제4조)

○ 징수교부금 교부시기를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에서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(안 제6조)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기준을 규정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

○ 금번 개정조례안의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,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체계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 시장·군수가 도세 부과·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, 읍·면·동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, 도지사의 직접 세무조사 대상기준을 규정(안 제3조)하는 등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